

제11장 정부조달

제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 나.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 다. **건설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 중분류 51 또는 공공조달용어 (CPV)¹ 코드(45100000, 45200000, 45300000, 45400000)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라. **일**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 마.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 바. **서면으로 또는 서면**이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

¹ 이는 유럽집행위원회 규정(EC) 제213/2008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8R0213>)에 정의되어 있다.

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전송 및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사.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²
- 아. **조치**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조달 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 자.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³
- 차.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둘 모두를 제출할 것을 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⁴
- 카. **조달계획공고**란 향후 조달 계획을 제공하며 조달기관이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 타.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 파.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⁵
- 하.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² 조지아의 경우, "제한입찰"은 "사전공표 없는 협상 절차"와 동등하다.

³ 조지아의 경우, "유자격자 명부"는 "동적 구매 시스템(dynamic purchasing system)"과 동등하다.

⁴ 조지아의 경우, "조달예정공고"는 "사전정보공고(prior information notice)"와 동등하다.

⁵ 조지아의 경우, "공개입찰"은 "공개절차(open procedure)"와 동등하다.

- 거.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1-가 당사국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 너.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 더.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⁶
- 러.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 머.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 버.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 서.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1)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를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 2)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제11.2조

⁶ 조지아의 경우, "선택입찰"은 "제한절차(restricted procedure)"와 동등하다.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무역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 상호적 그리고 점진적 개방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조달 사안에 대하여 양자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1.3조

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조달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정부 목적을 위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않는 것

나. 구매, 리스 그리고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다. 제11.7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정된 조달 금액이 부속서 11-가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제3항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으며, 부속서11-가에 명시된 조건
에 따르는 것

3. 부속서 11-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이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웅자, 지분참여, 보증 및 재정적 유인
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웅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계약

바.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1)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
는 조달

2)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
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것, 또는

3)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 가능한 절차 또는 조건
이 이 장과 불합치하게 되는 것

4.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의 자국 양허표에 다음의 정보를 명시한다.

- 가. 제1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기관
- 나. 제2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지방정부기관
- 다. 제3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모든 기관
- 라. 제4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
- 마. 제5절에는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 바. 제6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건설서비스
- 사. 제7절에는 일반 주체, 그리고
- 아. 제8절에는 정보의 공표

5.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조달기관이 부속서 11-가 당사국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1.5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그러한 요건에 적용된다.

가액산정

6.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⁷
-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않으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⁷ 조지아의 경우, 정부조달의 추정가액을 결정할 때, 조달기관은 특정 정부조달의 범위 안에서의 정부조달 수행과 관련되고 입찰 개시일까지 존재하는 모든 비용, 조달계약의 추정 기간 및 특정 정부 조달의 범위 안에서의 조달 대상물의 공급에 대하여 지급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고려한다.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쳐 추정되는 최대 총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에 관계없다)을 포함한다.

1) 할증료,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2) 그 조달이 선택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선택권의 총가액

7.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추정되는 최대 총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가.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다음 12개월에 걸쳐 조달 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나. 최초 낙찰 이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 가액

8.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경우,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조달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1)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최대 총추정가액, 또는

2)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추정가액

나.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월 추정분할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그리고

다. 계약이 확정기간 계약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호가 적용된다.

제11.4조

안보 및 일반적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제11.5조

일반 원칙

비차별

1.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3. 전자적 수단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참가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4.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 규정

5.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응구매

6.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7. 제1항 및 제2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1.6조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각 당사국은

가. 법,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법 또는 규정이 정하고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참조로 통합되는 표준 계약조항 및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정사항을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전자 또는 종이 매체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그리고

나. 요청에 따라, 당사국에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11.7조

공고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11.13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부속서 11-가에 기재된 전자적 수단에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매체는 널리 유포되고, 그러한 공고는 최소한 그 공고에 적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다. 반복계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 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라. 선택사항 또는 변형에 대한 설명

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한 또는 계약 기간

바. 사용될 조달방법과 그 방법이 협상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할지 여부

- 사.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자.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그것들이 제출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 차.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입찰서 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조달기관이 제11.9조에 따라 입찰 참가를 청하는 대상으로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협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그리고
- 타.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요약 공고

- 3.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약공고를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영어로 공표한다. 그 요약공고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의 대상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 다.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조달계획공고

4. 조달기관은 부속서 11-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 매체에 자신의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 공고”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그 조달계획 공고는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가 계획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5. 제2절 또는 제3절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은 조달계획공고를 조달예정공고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계획공고는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 중 그 조달기관에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관심있는 공급자가 그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문안을 포함해야 한다.

제11.8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조달기관은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조달기관은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역량,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4.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과산

나. 허위 신고

다. 이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11.9조

공급자 자격심사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하고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조달기관이 그들의 자격심사 절차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조달기관이 그들의 등록제도들 사이
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3.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자국의 조달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참가하
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등록제
도나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입찰

4.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가. 조달예정 공고에 최소한 제11.7조제2항 가호, 나호, 바호, 사호, 차호, 카호 및
타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공급자에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청
한다.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제11.11조제3항나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하는 적격 공급자에
게 최소한 제11.7조제2항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의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한다.

5. 조달기관은 조달 운영 과정에서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제한된 숫자의 공
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기술하지 않는 한, 모든 적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도록 허
용한다.

유자격자 명부

6.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유자격자 명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유
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청하는 공고가 부속서 11-가에 기재된 적절한 매체에

가. 매년 공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계속해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7. 제6항에 규정된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조건과 조달 기관이 공급자가 그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8.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 명부가 3년 이하 동안 유효하게 될 경우, 조달기관은 제6항에 언급된 공고를 그 명부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한 번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고는

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추가 공고는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고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9.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

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적격 공급자를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조달기관 결정에 관한 정보

10.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공급자에게 그 신청에 대한 조달기관의 결정을 신속하게 알린다.

11.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달 참가 신청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공급자를 유자격자 명부로부터 삭제하는 경우, 그 기관은 그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그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11.10조

기술규격 및 입찰서류

기술규격

1. 조달기관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4.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5.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그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조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입찰서류

7.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공급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과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그 조달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 평가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의 목록을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다. 그 기관이 계약의 낙찰시에 적용할 모든 평가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

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그 밖의 요건

- 마.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 바.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들
- 사.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가 제출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8.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의 인도 날짜 또는 서비스의 공급 날짜를 정할 때, 그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및 공급 지점으로부터 상품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요구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9.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은 특히 가격 및 그 밖의 비용 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및 인도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10. 조달기관은 신속하게,

-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응찰서를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입찰서류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나. 요청에 따라,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서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 다.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정

11. 조달기관이 계약의 낙찰 전에 조달예정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규정한 기준 또는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전달한다.

-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참가 중인 모든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수정하여 개정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충분한 시간 내

제11.11조

기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참가신청서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 나.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마감시한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마감일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다음의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공고 공표일, 또는
 -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 가. 조달기관이 제11.7조에 기술된 조달계획공고를 조달예정공고의 공표보다 최소 35일 그리고 12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했고, 그 조달계획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 1) 그 조달에 대한 설명
 - 2)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 3) 관심있는 공급자가 그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문안

- 4)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 5) 제11.7조에 따른 조달예정공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나. 반복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이 항에 근거한 입찰 기간을 차기 공고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최초의 조달예정공고에서 적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예정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공고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이 되도록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7. 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한 경우, 입찰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1.12조

협상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 또는 협상된 절차를 통하여 조달의 운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그 기관이 제1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또는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2. 조달기관은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시한을 제시한다.

제11.13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고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1.10조제7항부터 제11.10조제11항까지, 제11.11조, 제11.12조, 제11.14조 및 제11.1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경우,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참가를 신청한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다만, 입찰서류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증복을 초래할 경우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할 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의 경우. 다만, 일반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히,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와 관련하여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은 경우

2. 조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그 보고서는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 안을 포함한다.

제11.14조 전자 경매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려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가.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에 기초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자동 평가 방법
-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제11.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 1. 조달기관은 모든 입찰서를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찰하며 취급한다.
- 2.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계약의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의 낙찰

- 3.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 4. 조달기관이 계약을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5. 조달기관이 양 당사국의 국내 법률 기준상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에게 검증할 수 있다.

6. 조달기관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선택사항을 사용하거나,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수정하지 않는다.

제11.16조

조달 정보의 투명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참가한 공급자에게 그 기관의 계약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11.18조제2항 및 제11.18조제3항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 시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기관이 그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와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낙찰정보의 공표

2. 조달기관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속서11-가 제8 절에 열거된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그 공고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다. 낙찰자의 명칭 및 주소

라. 낙찰금액 또는 계약의 낙찰에 고려된 최고 및 최저 청약

마. 낙찰일, 그리고

바. 사용된 조달 방법의 종류 및 제11.13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
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서류, 보고서 및 전자적 추적 가능성의 유지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가. 제11.14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 및 보고서,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이터

제11.17조 정보의 공개

정보의 제공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
을 저해하게 될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합
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어떠한 특정 공급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국(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에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다.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게 될 경우, 또는

라.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11.18조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 조치의 준수 실패

모든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규정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2.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제기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한다.
3.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4.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의 문제제기를 접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당국 외의 기구가 이의제기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법원이 아닌 심의기구가 자신의 결정이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 가. 조달기관은 이의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의기구에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
- 나. 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기구의 결정 전에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 다. 참가자는 대표되고 동반될 권리를 가진다.

라.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마. 참가자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바. 심의기구는 시의적절하게 서면으로 결정하거나 권고하고,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나. 심의기구가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제11.19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

1.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하여 순전히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 또는 부속서 11-가의 양허표에 사소한 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을 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달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통보에 적절한 보상조정을 동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은 통보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당사국은 제안된 수정이 당사국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사국이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통보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반대하며,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 장에 따른 조달기관의 지속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관련 당사국들이 정정, 사소한 개정, 조정 또는 제안된 수정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또는 통보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수정은 제5항의 규정에 합치되게 이루어진다.

5. 협정의 공동위원회는 합의된 정정, 사소한 개정 또는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11-가의 관련 절을 수정한다.

제11.20조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입찰절차에의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소상공인 ·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이 중요함을 또한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

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노력한다.

제11.21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하여 각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더불어 각국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규제 틀, 우수 관행 및 통계와 같은 경험 및 정보의 교환

나. 정부조달제도에서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

다.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라. 공무원 훈련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제11.22조

정부조달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 나. 협력활동을 조정한다.
 - 다.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라. 제11.19조에 따른 통보의 목적상 문의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대로 회합한다.
4.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23조

추가 협상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 접근 적용 범위에 대하여 비당사국에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